

의안번호	2219887
의 퇴 인	전진숙의원
회 답 일	2026. 8. 21.
추계번호	26C3469

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8조의2(청소년 건강지원사업)	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신체적·정신적·사회적 건강 증진과 청소년 간 건강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 1. 신체활동·영양·수면·성장·발달 등 생활건강에 관한 상담·교육 및 체험활동 지원 2. 월경 건강, 생식 건강 및 성 건강, 위기 임신(본인이 원하지 아니하였거나 주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태에서 하게 된 임신을 말한다), 성매개 감염병 등과 관련한 상담·교육·정보제공 및 검진·진료·치료 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·연계 3. 디지털 기기 과의존 예방 및 온라인 환경에서의 건강한 관계 형성 등 디지털 건강에 관한 교육 및 지원 4. 건강위험 요인의 조기 발견과 그 진단·치료 등에 필요한 보건의료·상담·복지 서비스 제공·연계 및 긴급 보호·지원 5. 생리용품, 위생용품, 일반의약품 등 청소년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물품 지원 6. 건강 관련 지식·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고 및 이해·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지원	의무규정
2	안 제8조의3(청소년 건강체험활동비 지원)	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취약계층 청소년이 신체적·정신적·사회적 건강 증진을 위하여 체육·문화 활동 등의 프로그램, 서비스 또는 관련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(제1항)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기준·범위 및 방법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(제2항)	재량규정
3	안 제8조의4(여성청소년의 월경 건강을 위한 생리용품 지원)	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의 월경 건강을 위하여 생리용품을 지원하여야 함(제1항)	의무규정
4	안 제8조의5(청소년 건강지원 전담기관 설치·운영)	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의2에 따른 청소년 건강지원사업 및 그 밖에 청소년 건강지원 업무를 전문적·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설치·운영할 수 있음(제1항)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설치·운영 기준 및 종사자 자격기준과 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2항)	재량규정

Ⅱ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8조의2(청소년 건강지원사업)	미대상: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현재 실시 중인 청소년 건강 지원사업(표 1)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서, 개정안 시행에 따라 직접적인 추가재정소요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음
2	안 제8조의4(여성 청소년의 월경 건강을 위한 생리용품 지원)	미대상: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은 기초생활보장급여(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)수급자, 법정차상위계층, 법정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가구의 9~24세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 중임(2026년 예산 33,711백만원)
3	안 제8조의3(청소년 건강체험활동비 지원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4	안 제8조의5(청소년 건강지원 전담 기관 설치·운영)	

【표 1】 안 제8조의2 관련 건강지원사업 실시 현황

안 제8조의2 각 호	사업명	주요 내용
1. 신체활동·영양·수면·성장·발달 등 생활건강에 관한 상담·교육 및 체험활동 지원	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	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급식, 상담, 건강관리 등 생활지원, 체험활동, 학습지원 등 종합서비스를 통해 건강한 성장 및 자립역량 배양
2. 월경 건강, 생식 건강 및 성건강, 위기 임신, 성매매 감염병 등과 관련한 상담·교육·정보제공 및 검진·진료·치료 등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	- 학교 밖 청소년 등 건강검진 지원 -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·운영	- 학교 밖 청소년(9~18세)에게 정기적으로(매 3년마다)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- 연 200만원 이하의 진찰·검사, 기타 치료비 지원
3. 디지털 기기 과의존 예방 및 온라인 환경에서의 건강한 관계 형성 등 디지털 건강에 관한 교육 및 지원	-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회복 지원 -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운영	- 급격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청소년의 매체이용 증가로 인한 인터넷·스마트폰 과의존 등의 디지털미디어 역기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진단조사, 상담·치료연계, 치유프로그램 등 제공

안 제8조의2 각 호	사업명	주요 내용
		- 다양한 도구와 매체를 활용하여 아동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전문 성교육 제공으로 올바른 성 가치관 정립 지원
4. 건강위험 요인의 조기 발견과 그 진단·치료 등에 필요한 보건 의료·상담·복지서비스 제공·연계 및 긴급 보호·지원	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	사회·경제적으로 취약한 위기청소년 대상 연 200만원 이하의 진찰·검사, 기타 치료비 지원
5. 생리용품, 위생용품, 일반의약품 등 청소년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물품 지원	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	9세~24세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 지원
6. 건강 관련 지식·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고 및 이해·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지원	학생건강증진센터 설치·운영(학교보건법 제16조의2, 교육부) 및 보건교육 등	학생 건강증진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·운영,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상담 지원

자료: 성평등가족부

2. 상세사유

가. 청소년 건강체험활동비 지원(안 제8조의3)

- 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건강취약계층 청소년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체육·문화 활동 등의 프로그램, 서비스 또는 관련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, 지원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그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음
- 성평등가족부는 스포츠·문화 바우처 등 유사 사업과 중복 인식의 우려가 있어, ‘건강체험활동비 지원’이 아닌, ‘건강체험활동 사업 지원’으로 변경하여 추진 중에 있고, 이와 관련한 예산이 편성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음
 - 다만, 개정안에서 비용 지원의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, 지원 규모 또한 알 수 없어 현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
나. 청소년 건강지원 전담기관 설치·운영(안 제8조의5)

- 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안 제8조의2에 따른 건강지원 사업 및 그 밖에 청소년 건강지원업무를 전문적·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전담기관을 설치·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음
- 다만, 현시점에서 별도의 전담기관 설치·운영 여부 및 그 규모를 알 수 없어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 - 참고로, 성평등가족부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청소년 건강지원업무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별도의 전담기관 설치·운영 필요성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음
 - 2026년 기준 청소년상담복지센터(시군구 224개소)에 대한 지원 예산은 총 23,654백만원(224개소×102.937백만원)임(국비 50%, 지방비 50%)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,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지출 증가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의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이제정	문지은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제정	02-6788-3739	jejeong2@na.go.kr